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중재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IOTT ASSOCIATES, L.P.)

청구인

대한민국

피청구국

청구인의 중재판정문
정정 요청
2023 년 7 월 20 일

목차

I. 서론.....	3
II. 중재판정부의 손해배상 산정을 뒤집으려는 대한민국의 시도는 UNCITRAL 규칙 제 38 조의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3
A. 제 38 조의 범위.....	4
B. 한국의 정정 요청.....	6
III. 예비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손실의 계산 방식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7
IV. 신청취지.....	12

I. 서론

1. 2023년 7월 18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중재판정부의 2023년 6월 20일자 중재판정문(이하 “중재판정문”)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오류”¹를 정정할 목적으로 2013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하 “UNCITRAL 규칙”) 제 38조에 따라 중재판정문 해석·정정 요청서(이하 “한국의 정정 요청”)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한국의 정정 요청은 UNCITRAL 규칙 제 38조의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한국의 중재판정부의 손해배상 산정 방식을 “정정”한다는 주장은 손해 산정에 대한 제 3차 심리 후 서면을 제출하는 것과 다른 없는 바, 이는 기각되어야 합니다(아래 제 II 장 참조).
3. 중재판정부가 제 38조상 정정의 허용 범위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정정도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은 본 신청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문에 대한 정정 요청을 제출하는 바이며, 이는 UNCITRAL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요청이라 할 것입니다(아래 제 III 장 참조).

II. 중재판정부의 손해배상 산정을 뒤집으려는 대한민국의 시도는 UNCITRAL 규칙 제 38조의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4.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2023년 7월 18일자 서신에서 명시한 기한 내에 한국의 정정 요청 일체에 대해 답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청구인은 한국의 정정 요청이 제 38조의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남을 지체 없이 지적합니다.²

¹ 한국의 정정 요청, 제 II 장.

² 청구인은 한국의 정정 요청이 UNCITRAL 규칙 제 37조의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요청에 기재된 진술이 본 서면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진술에 대한 인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제 38 조의 범위

5.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최종 중재판정문과 함께 종료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UNCITRAL 규칙 제 38 조는 중재판정부의 최종 중재판정문에 대한 정정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 38 조는 다음과 같습니다:³

1.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수령 후 30 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판정문의 계산상 오류, 오타자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 또는 누락을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정당하다고 중재판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의 통지 후 30 일 이내에 스스로 이와 같은 정정을 할 수 있다.

6. 따라서 제 38 조는 모든 주요 국제 중재 규칙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경정 규칙 (slip rule)”의 일종이며,⁴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계산상 오류, 오타자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 또는 누락*”을 정정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표현과 각 구성요소들은 쉽게 이해가 가능하며, 하나의 개념으로 의도된 것이 명백합니다. 즉, 본 조항에 의해 정정이 허용되는 “계산상” 오류는, 동 조항에 의해 마찬가지로 정정이 허용된 “오타자” 등과 동등한 수준의 오류인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오류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³ UNCITRAL 규칙, 제 38(1)-(2)조.

⁴ 예를 들어, 2018 년 HKIAC 규칙 제 38 조; 2021 년 ICC 규칙 제 36 조; 2020 년 LCIA 규칙 제 27 조; 2012 년 PCA 규칙 제 38 조; 2023 년 SCC 규칙 제 47 조; 2016 년 SIAC 규칙 제 33 조 참조. G.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 2022), Exh RLA-175, 제 24 장, 10 면(2021 년 ICC 규칙 제 36 조의 정정 규칙을 언급하면서 “다른 기관의 규칙도 중재인들에게 정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해당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함)(강조표시 추가)도 참조.

- a. 증인의 이름을 잘못 표기한 경우;⁵
 - b. 동사에 “않는다(not)”를 누락한 경우;
 - c. 숫자의 합이 안 맞거나, 소수점과 쉼표를 반대로 쓰거나, 통화를 혼동한 경우;⁶
 - d.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혼동한 경우;⁷
 - e. 중재판정문에서 언급된 날짜, 이름 및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 f. 서신에서 발췌한 인용구를 정정할 경우.⁸
7. 제 38 조는 중재판정문 중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대한 개념적 오류”⁹나 “법적 분석 또는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¹⁰ 또한 “중재판정문의 논리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경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¹¹ 따라서, 중재판정부에게 “증거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본안의 판단을 바꾸며, 기존 중재판정문에서 누락되었던 새로운 사실관계와 명령을

⁵ J. Paulsson and G. Petrochilos, *UNCITRAL Arbitration* (2017), **Exh CLA-205**, Commentary on Section IV, 제 38 조, 제 5 항.

⁶ T. Webster and M. Bühler, *Handbook of ICC Arbitration: Commentary and Materials* (5th ed., 2021), **Exh CLA-209**, 제 6 장, 617 면, 제 36-5 항. G.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 2022), **Exh RLA-175**, 제 24 장, 10 면(“대부분의 정정은 실제로 수학적 또는 계산상 오류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점 표시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침표가 쉼표로 변경되어야 하며, 이는 영어권 서수 체계의 특징입니다.”); D. Caron & L.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nd ed., 2013), **Exh RLA-173**, 제 26 장, 811 면, 제 B(1)항(“소수점 위치 실수나 서명 누락과 같은 중재판정문의 오류 또는 누락”의 정정을 언급함)도 참조.

⁷ M. Scherer, L. Richman, et al., *Arbitrating under the 2020 LCIA Rules: A User’s Guide* (2021), **Exh CLA-208**, 제 22 장, 제 71-73 항.

⁸ J. Choong, M. Mangan, et al., *A Guide to the SIAC Arbitration Rules* (2nd ed., 2018), **Exh CLA-204**, 제 14 장, 제 14.60 항; D. Caron & L.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nd ed., 2013), **Exh RLA-173**, 제 26 장, 812 면, 제 B(1)항(“당사자 이름의 오타, 부정확한 날짜 또는 오역”에 대한 정정을 언급함).

⁹ J. Paulsson and G. Petrochilos, *UNCITRAL Arbitration* (2017), **Exh CLA-205**, Commentary on Section IV, 제 38 조, 제 5 항.

¹⁰ G.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 2022), **Exh RLA-175**, 제 24 장, 10 면.

¹¹ M. Moser and C. Bao, *A Guide to the HKIAC Arbitration Rules* (2nd ed., 2022), **Exh CLA-207**, 제 11 장, 제 11.89 항.

추가”하라고 요구하거나¹² 중재판정부에게 “계산에 사용된 방식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정정 요청은 부적절합니다.¹³

B. 한국의 정정 요청

8. 한국의 정정 요청은 손해배상 산정에 사용된 방식의 변경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38 조의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한국은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문에 대한 “정정”을 다루는 6 페이지에 걸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¹⁴
 - a. 한국의 협정 위반으로 인하여 한국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을 요청합니다.¹⁵
 - b. 중재판정부의 계산에 대해 중재판정문은 물론이고 한국의 기존 서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값을 도출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계산 단계를 포함시키도록 손해 산정 방식을 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c. 중재판정부가 판정한 손해액 산정에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입력 값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문에 나타난 수치들에 대한 다수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9. 이러한 요청들에 의해 변경될 중재판정부 분석의 성격이나 변경의 수는 “계산상 오류”나 “오탈자” 성격의 오류에 대한 정정만을 허용하는 제 38 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점을 확인시킵니다. 한국의 정정 요청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완료한 계산에 대한 정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정정의 근거가 될 다른

¹² M. Scherer, L. Richman, et al., *Arbitrating under the 2020 LCIA Rules: A User's Guide* (2021), **Exh CLA-208**, 제 22 장, 제 73 항.

¹³ J. Ragnwaldh, F. Andersson, et al., *A Guide to the SCC Arbitration Rules* (2019), **Exh CLA-206**, 제 6 장, 143 면.

¹⁴ 한국의 요청, 제 9-21 항 참조.

¹⁵ 한국의 요청, 제 14-21 항 참조(합의 계약, 2016. 3. 15., **Exh C-450**; 서울고등법원 주식매수가격 결정, 2016. 5. 30., **Exh C-53**; 대법원 주식매수가격 결정, 2022. 4. 14., **Exh C-782** 인용) 참조.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에게 새로운 계산 방식을 수용할 것을 최초로 요청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제 3 차 심리 후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10. 청구인이 추후에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한국의 정정 요청은 UNCITRAL 규칙 제 38 조에서 정하는 중재판정문 정정의 허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바, 이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11. 청구인은 한국이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문의 취소를 신청하면서 당해 취소 신청을 뒷받침하는 진술서 사본을 중재판정부에게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에 따르면 1996 년 영국 중재법 제 68 조상 “중대한 하자”가 한국의 취소 신청 근거 중 일부임이 드러나며, 이러한 하자는 다름 아닌 한국이 정정 요청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방법론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68 조에 의한 신청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한국의 취소 신청을 부분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 38 조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제 68 조에 의한 신청을 하려면 한국은 “실질적인 불공정”을 초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데, 중재판정부가 손해산정 방식에 특정 단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러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해당 단계는 한국이 기존에 주장했던 적도 없고 특정 증거를 통해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재판정부가 제 38 조에 의한 정정을 통하여 손해 계산 방식에 그와 같은 새로운 단계를 도입할 경우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청구인은 중재판정문을 공격하려는 한국의 실망스러운 노력들과 무관하게 중재판정부가 제 38 조를 충실하게 적용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III. 예비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손실의 계산 방식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12. 만약 중재판정부가 방법론적 정정 역시 제 38 조의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청구인은 손해배상액이 한국의 요청에 의해 감액될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증액되는 효과가 있는 다음과 같은 정정을 중재판정부에게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3.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서 청구인 손실의 산정에 “*Chorzów Factory* 사건에서 명시된 완전 배상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¹⁶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2015년 7월 16일자 지분의 가치를 기초로 청구인이 이후에 (i) 2015년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매수청구권 대상이 아닌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고, (ii) 2016년 3월 18일에 합의서에 따른 자신의 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을 삼성물산에 매각하며, (iii) 2022년 5월 12일에 (삼성물산에 매각한 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의 가격과 관련하여) 합의서에 따른 “추가지급금(Top Up Payment)”의 방식으로 수령한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¹⁷
14. 마찬가지로 이자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청구인이 배상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빼앗긴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투자하였다면 얻었을 금액을 전부 배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¹⁸
15. 이러한 의도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본 판정일까지 연 복리로” 청구인의 손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¹⁹
16. 중재판정부는 판정에 따른 계산에 위 원칙과 판단이 반영될 것을 명백히 의도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에 대한 이자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계산 결과는 중재판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러한 원칙과 판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7. 특히 청구인의 손실에 대한 일부 차감은 2015년 7월 16일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나 계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순손실(687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¹⁶ 중재판정문, 제 931 항.

¹⁷ 중재판정문, 제 935-938 항.

¹⁸ 중재판정문, 제 961 항.

¹⁹ 중재판정문, 제 961 항.

2015년 7월 16일 이후 최종 순손실액에 발생하는 이자를 토대로 계산하였습니다.²⁰ 그러나 실제로 청구인이 2015년 7월 16일에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는 771,026,741,100 원이었고,²¹ 그중 일부만이 몇 개월 내지 몇 년 간, 즉 (i) 2015년 9월 17일부터 25일 사이(179,759,400,000 원),²² (ii) 2016년 3월 18일(456,620,599,950 원),²³ 및 (iii) 2022년 5월 12일(65,902,634,943 원) 수 회에 걸쳐서 회수되었습니다.²⁴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2015년 7월 16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실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이자 계산 방식에 대한 오류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중재판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에게 “전부 배상”을 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18. 따라서 청구인은 손해의 산정이 “청구인이 배상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빼앗긴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투자하였다면 얻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배상한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부의 정정을 요청합니다.²⁵
19. 중재판정부의 오류를 정정할 경우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²⁰ 중재판정부, 제 938 항.

²¹ 중재판정부, 제 935 항.

²² 중재판정부, 제 937 항. Boulton 제 1 차 보고서, 2019. 4. 4., 제 6.2.12 항; Boulton 제 2 차 보고서, 2020. 7. 17., 제 10.2.6 항; 재반박서면, 2020. 7. 17., 제 554 항; Smith 제 2 차 보고서, 2020. 7. 16., 제 66 항; EALP, 삼성물산 주식 처분 내역, 2015. 9. 15. - 10. 1., **Exh C-672**; EALP의 삼성물산 매수청구 주식 외 주식 처분에 대한 스프레드 시트, 2015. 9. 14. - 10. 1., **Exh C-443**도 참조.

²³ 중재판정부, 제 936 항. 재반박서면, 2020. 7. 17., 제 553 항; Smith 제 2 차 보고서, 2020. 7. 16., 제 66(i)항; BAML 예탁금 명세서(EALP), 2016. 3. 1. - 5. 1., **Exh C-449**도 참조.

²⁴ 중재판정부, 제 936 항. 청구인의 심리 후 답변서면, 2022. 5. 18., 제 102 항도 참조.

²⁵ 중재판정부, 제 961 항.

기간	청구인이 빼앗긴 금액에 대한 변경 (KRW)	빼앗긴 금액에 대한 개시잔액 (KRW)	개시잔액에 대한 이자 (KRW) ²⁶	최종 금액 (KRW)
2015년 7월 16일 – 2015년 9월 16일	청구인 소유 삼성물산 주식의 2015년 7월 16일자 가치	771,026,741,100	6,520,476,800	777,547,217,900
2015년 9월 17일 – 2016년 3월 17일	2015년 9월 17일부터 25일 사이에 매수청구권 대상이 아닌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여 회복한 금액 ²⁷	597,787,817,900	14,803,357,630	612,591,175,529
2016년 3월 18일 – 2022년 5월 11일	2016년 3월 18일에 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을 삼성물산에 매각하여 회복한 금액	155,970,575,579	54,615,392,804	210,585,968,384

²⁶ 청구인은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된 표에서 예시 목적만을 위하여 손해 및 이자를 산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판정 전 이자에 적용되는 통화에 관한 한국의 해석 요청에 대하여 답변할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²⁷ 실제로는 매수청구권 대상이 아닌 모든 주식이 2015년 9월 17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각되었지만, EALP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것이 2015년 9월 17일에 시장에 매각되었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합니다.

2022년 5월 12일 - 2023년 6월 20일	(65,902,634,943) 2022년 5월 12일에 합의 계약에 따른 추가지급금으로 회복한 금액	144,683,333,441	8,048,624,846	152,731,958,287
2023년 6월 20일까지 발생한 총 이자			83,987,852,080	

20.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중재판정문을 정정해야 합니다:

원문	정정문	중재판정문 참조
중재판정부는 발생 이자를 2015년 7월 16일부터 본 판정일까지 연 복리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청구인이 2015년 7월 16일에 상실한 주식 가치(771,026,741,100 원)뿐만 아니라, (i) 179,759,400,000 원(2015년 9월 17일부터 25일 사이에 매수청구권 대상이 아닌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여 회복한 금액), (ii) 456,620,599,950 원(2016년 3월 18일에 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을 삼성물산에 매각하여 회복한 금액) 및 (iii) 65,902,634,943 원(2022년 5월 12일에 합의 계약에 따른 추가지급금으로 회복한 금액) 등 청구인이 이후에 회복한 금액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발생 이자를 2015년 7월 16일부터 본 판정일까지 연 복리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제 961 항

<p>전술한 이유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p> <p>[...]</p> <p>c. 피청구국에게 2015년 7월 16일부터 본 판정일까지 연복리로 위(b)항의 금액에 대하여 5%의 비율로 판정 전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p> <p>[...]</p>	<p>전술한 이유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p> <p>[...]</p> <p>c. 위 제 96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이 2015년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및 2016년 3월 1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회복한 금액을 고려하여, 피청구국에게 771,026,741,100 원에 대하여 2015년 7월 16일부터 본 판정일까지 연복리로 위(b)항의 금액에 대하여 5%의 비율로 판정 전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p>	<p>제 995(c)항</p>
--	--	------------------

IV. 신청취지

21. 청구인이 추후에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한국의 정정 및 해석 요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22. 중재판정부가 제 38 조의 허용 범위에 관한 한국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에게 본 신청서 제 20 항에 적시된 정정을 요청합니다.

상기 내용을 정중하게 제출합니다.

Three Crowns LLP

Constantine Partasides KC
 Dr. Georgios Petrochilos KC
 Elizabeth Snodgrass
 Simon Consedine
 Nicola Peart
 YiKang Zhang
 Julia Sherman
Three Crowns LLP

Beomsu Kim
 Young Suk Park
KL Partners

Michael S. Kim

Andrew Stafford KC
Robin J. Baik
Kunhee Cho
S. Michael Bahn
Kobre & Kim LLP

2023 년 7 월 20 일